

대전광역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191
----------	-----

제출연월일 : 2007. 8. 24.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지리정보 사업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추진 및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측량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3) 입법예고 : 2007. 7. 13. ~ 8. 2.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국가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2호중 “대전광역시·그 소속 행정기관 및 자치구를”을 “대전광역시 본청, 의회사무처 및 소속기관을”로 한다.

제4조제1항중 “법 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의한 국가지리정보체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가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법 제21조 및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3조”를 “「국가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전자결재”를 “전자결제”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제2호 및 제4호중 “시”를 각각 “대전광역시”로 하고, 제3호중 “시장”을 “대전광역시장”으로 한다.

제명 “대전광역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를 “대전광역시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9조제1항중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대전광역시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을 “「대전광역시 지리정보 보안관리규정」”으로 한다.

별표 2 제5호중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을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으로 한다.

별지 서식중 “대전광역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를 “「대전광역시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리정보의 제공 수수료(제10조제1항 관련)

종 류	금 액	비 고
1. 출력도면	「대전광역시 정보화촉진조례」 별표의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징수기준을 적용·산정하여 대전광역시장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	
2. 수치지도	「측량법」 제2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이 고시한 단가 적용 금액 가. 1:1,000 이상 자료는 1:1,000 단가 준용 나. 1:5,000 이상 자료는 1:5,000 단가 준용	CD 등 저장매체는 사용자가 부담
3. 항공사진 래스터 데이터 (Raster data)	「측량법 시행규칙」 별표 7의 해당 항목 적용 금액	CD 등 저장매체는 사용자가 부담
4. 밀착항공사진	「측량법 시행규칙」 별표 7의 해당 항목 적용 금액	
5. 확대항공사진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지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위하여 <u>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u>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국가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u>」 ----- ----- -----</p>
<p>제2조(정의) (생략) 1. (생략) 2. “<u>관리기관</u>”이라 함은 지리정보를 생산·관리하는 <u>대전광역시·그 소속 행정기관 및 자치구</u>를 말한다. 3. (생략)</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u>대전광역시 본청, 의회사무처 및 소속기관</u>----- ----- 3. (현행과 같음)</p>
<p>제4조(지리정보체제시행계획수립 등) ① <u>대전광역시</u>(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법 제5조 및 제6조</u> 규정에 의한 <u>국가지리정보체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u>에 따라 대전광역시지리정보체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생략)</p>	<p>제4조(지리정보체제시행계획수립 등) ① ----- ----- 「<u>국가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u>」 <u>제7조의 규정</u>----- ----- ----- 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정보 제공) ① <u>시장</u>은 <u>법 제21조 및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3조</u>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정보를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p>	<p>제9조(정보 제공) ①----- 「<u>국가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u>」 <u>제21조</u>----- ----- ----- ----- ②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수수료)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수수료를 대전광역시 수입증지 또는 시장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리정보유통망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결재로 납부 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별표 1] 지리정보의 제공 수수료(제10조제1항 관련)</p>		<p>제10조(수수료) ①----- ----- ----- ----- ----- 전자결재----- ② (현행과 같음)</p> <p>[별표 1] 지리정보의 제공 수수료(제10조제1항 관련)</p>			
종류	금 액	비고	종류	금 액	비고
1. 출력도면	대전광역시 정보화촉진조례 별표의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징수기준을 적용·산정하여 대전광역시장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		1. 출력도면	「대전광역시 정보화촉진조례」 별표의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징수기준을 적용·산정하여 대전광역시장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	
2. 수치지도	측량법 제23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이 고시한 단가 적용 금액 가. 1:1,000 이상 자료는 1:1,000 단가 준용 나. 1:5,000 이상 자료는 1:5,000 단가 준용	C D 등 저 장 매 체 는 사 용 자 가 부 담	2. 수치지도	「측량법」 제2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이 고시한 단가 적용 금액 가. 1:1,000 이상 자료는 1:1,000 단가 준용 나. 1:5,000 이상 자료는 1:5,000 단가 준용	C D 등 저 장 매 체 는 사 용 자 가 부 담
3. 항공사진 래스터 데이터 (Raster data)	측량법시행규칙 별표 7의 해당 항목 적용 금액	C D 등 저 장 매 체 는 사 용 자 가 부 담	3. 항공사진 래스터 데이터 (Raster data)	「측량법 시행규칙」 별표 7의 해당 항목 적용 금액	C D 등 저 장 매 체 는 사 용 자 가 부 담
4. 밀착항공사진	측량법시행규칙 별표 7의		4. 밀착항공사진	「측량법 시행규칙」 별표	
5. 확대항공사진	해당 항목 적용 금액		5. 확대항공사진	7의 해당 항목 적용 금액	

현	행	개	정	안																		
<p>[별표 2] 수수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제10조제2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감 면 대 상</th> <th style="text-align: center;">감면율</th> </tr> </thead> <tbody> <tr> <td>1. (생략)</td>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생략)</td> </tr> <tr> <td>2. 시의 지하시설물(전기, 통신, 가스, 난방 등)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참여하는 기관에 시와 관련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이 경우, 자료의 제공범위는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으로 제한한다.</td> </tr> <tr> <td>3. 기타 <u>시</u>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td> </tr> <tr> <td>4. <u>시</u> 및 자치구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에 제공되는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생략)</td> </tr> <tr> <td>5. (생략)</td> <td></td> </tr> </tbody> </table>		감 면 대 상	감면율	1. (생략)	(생략)	2. 시의 지하시설물(전기, 통신, 가스, 난방 등)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참여하는 기관에 시와 관련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이 경우, 자료의 제공범위는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으로 제한한다.	3. 기타 <u>시</u>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u>시</u> 및 자치구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에 제공되는 경우	(생략)	5. (생략)		<p>[별표 2] 수수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제10조제2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감 면 대 상</th> <th style="text-align: center;">감면율</th> </tr> </thead> <tbody> <tr> <td>1. (현행과 같음)</td> <td rowspan="5" style="text-align: center;">(현 행 과 같음)</td> </tr> <tr> <td>2. <u>대전광역시</u>----- ----- ----- <u>대전광역시</u>----- ----- -----</td> </tr> <tr> <td>3. --- <u>대전광역시장</u>----- --</td> </tr> <tr> <td>4. <u>대전광역시</u>----- ----- -----</td> </tr> <tr> <td>5. (현행과 같음)</td> </tr> </tbody> </table>			감 면 대 상	감면율	1. (현행과 같음)	(현 행 과 같음)	2. <u>대전광역시</u> ----- ----- ----- <u>대전광역시</u> ----- ----- -----	3. --- <u>대전광역시장</u> ----- --	4. <u>대전광역시</u> ----- ----- -----	5. (현행과 같음)
감 면 대 상	감면율																					
1. (생략)	(생략)																					
2. 시의 지하시설물(전기, 통신, 가스, 난방 등)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참여하는 기관에 시와 관련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이 경우, 자료의 제공범위는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으로 제한한다.																						
3. 기타 <u>시</u>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u>시</u> 및 자치구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에 제공되는 경우	(생략)																					
5. (생략)																						
감 면 대 상	감면율																					
1. (현행과 같음)	(현 행 과 같음)																					
2. <u>대전광역시</u> ----- ----- ----- <u>대전광역시</u> ----- ----- -----																						
3. --- <u>대전광역시장</u> ----- --																						
4. <u>대전광역시</u> ----- ----- -----																						
5.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 (국가지리정보체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정부는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국가지리정보체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지리정보(이하 "기본지리정보"라 한다)의 구축 및 관리
3.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관리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4.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5. 국가지리정보체계의 활용 및 유통
6.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관리 및 유통에 관한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7. 지리정보체계의 표준화
8. 지리정보체계와 관련된 산업의 육성
9. 기타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건설교통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리정보체계추진위원회(이하 "국가지리정보체계추진위원회"라 한다) 및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정보화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이를 확정한다.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의 심의는 이를 생략한다.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리정보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있어서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와 관련된 국가지리정보체계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그 집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국가지리정보체계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실적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 (지역별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관할구역에서 시행하기 위하여 지역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별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도록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지역별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0조 (지리정보체계의 표준화) ①정부는 지리정보체계의 호환성 확보 및 공동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지리정보체계관련 표준의 개발 및 보급
2. 지리정보체계관련 국제표준의 연구 및 국내도입
3. 지리정보체계의 표준화에 관한 국제협력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리정보체계의 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리기관 등에 대하여 지리정보체계의 표준을 사용하거나 지리정보체계의 표준을 채택한 제품을 제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1조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복제·판매 등) ①관리기관의 장은 그가 관리하고 있는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또는 간행하여 판매 또는 배포하거나 당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를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수 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의 이용 절차 및 수수료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3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제공의 촉진등) ①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독점방지와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보유정보의 제공을 확대하고, 그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유통 및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소재 안내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간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1999.1.21]

□ 측량법 제23조

제23조 (측량성과의 간행등) ①국토지리정보원장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본측량의 측량성과를 사용하여 지도 기타 필요한 간행물(이하 "지도등"이라 한다)을 간행하여 발매 또는 배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안보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지도등에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1.13, 2000.1.28, 2004.1.20>

②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등을 간행하여 발매 또는 배포하게 하거나 간행된 지도등을 발매 또는 배포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00.1.28, 2004.1.20, 2006.12.2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지도등의 원판제작등에 소요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2004.1.20>

④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 등의 발매 또는 배포 대행자(이하 "지도판매대행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도판매대

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도판매대행자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0>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도판매대행자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판매대행자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3. 무단으로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복제하여 유통시킨 경우
 4.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도 등을 간행한 경우
 5.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도·연안해역기본도·측량용 사진을 국외로 반출한 경우
 6. 특별한 사유 없이 지도판매대행 업무를 2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⑤지도판매대행자의 지정기준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2.20>
-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등의 판매가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7.1.13, 2006.12.20>
- ⑦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행한 지도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것을 기본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04.1.20, 2006.12.20>

□ 측량법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 (지도등의 판매가격)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 등의 판매가격을 정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축척
3. 규격
4. 단위
5. 판매가격
6. 기타 필요한 사항

대전광역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7년 9월 11일
행정자치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8월 24일 대전광역시장
2. 회 부 일 자 : 2007년 8월 27일
3. 상 정 일 자 : 제16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07. 9. 11)
상정, 심사,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기획관리실장 송석두)

1. 제안이유

지리정보 사업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추진 및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4조).

III. 전문위원 검토요지(전문위원 이희배)

○ 본 개정 조례 안은

관계법령인 「국가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과 「측량법」등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을 정비하고,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 조문을 수정하려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IV. **토 론 요 지** : 생 략
- V.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VI.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